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|      |     |
|------|-----|
| 의안번호 | 311 |
|------|-----|

2007년 9월 4일  
교육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8월 17일, 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
- 나. 회부일자: 2007년 8월 21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: 제1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 (2007년 9월 4일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교육지원국장 한은석)

가. 제안이유

- 교육비를 납부 받은 자가 교육비를 납부하는 자에게 소득공제용(연말정산용) 등에 필요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 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고,
- 수수료 없이 발급하는 유사한 다른 증명서 발급(보험료 납입증명서, 카드사용 증명서 등)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남.
- 또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수수료 수입이 학교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,
- 교육수요자인 학생,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바 있음.

나. 주요골자

- 현재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통당 3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청수)
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7조제1항(수수료)에 따라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발급받는 자에게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
- “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”는 관련 법률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교육비를 납부 받은 자가 납부하는 자에게 소득공제용(연말정산) 등에 필요한 “교육비납입증명서”를 발급 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유사한 증명서(보험료 및 카드사용증명서 등) 발급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고,
- 납부자가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납부자의 권리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이를 특정인을 위한 사무로 규정하여 발급수수료 300원을 징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됨.
- 또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의 별표 제3호 “다목”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삭제를 요청하고 있고,
-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수수료는 자체수입중 수수료 수입에 해당되어 2006년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초·중·고·특수학교 전체를 합하여 6만2천여건에 1천862만여원 정도의 수입이고, 학교당 평균 1만5천원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이를 감면할 경우 자체수입이 그 만큼 감소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.
- 아울러 동 조례의 별표 제3호 “라목”에 학비감면증명 수수료를 3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 있는 바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감면을 받고 있다는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, 학비감면의 취지와 맞지 않고, 학비감면 증명서를 발급받는 학생수가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동조례의 “다”목과 “라”목을 합

께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학비감면증명 확인서 발급의 경우에도 1통당 발급 수수료 300원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.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별표 중 학비감면증명 수수료 삭제(안 별표 제3호 “라”목 삭제)

8. 심사결과 : 「수정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....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